

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06.0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」의 개정으로 변경된 구 상징문양에 맞추어 우리구 수입증지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문양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수입증지에 인영된 사하구 상징 문양을 새로 바뀐 문양으로 변경하고, 문양 위치를 상단부에 표시되도록 개정함(안 별표 3, 안 별표 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07년 제2회 추경에 요구(5,600천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7. 5. 17 ~ 5. 25(8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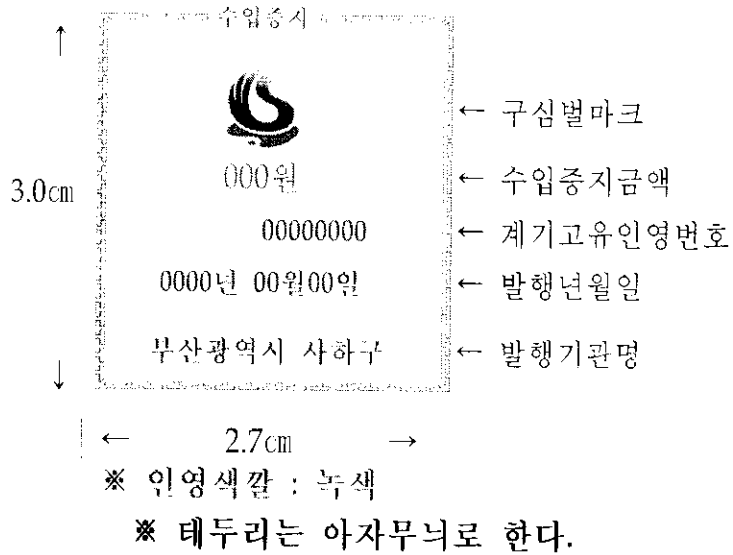
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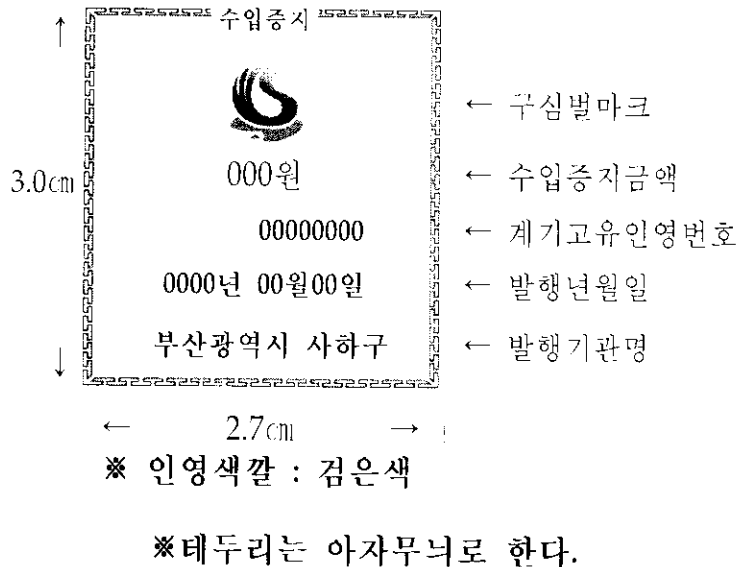
[별표 3]

계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(제6조제3항 관련)



[별표 4]

무인발급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(제6조제4항 관련)



(참고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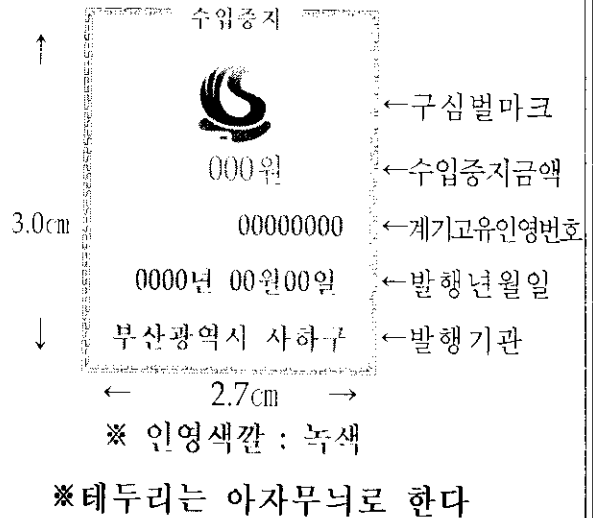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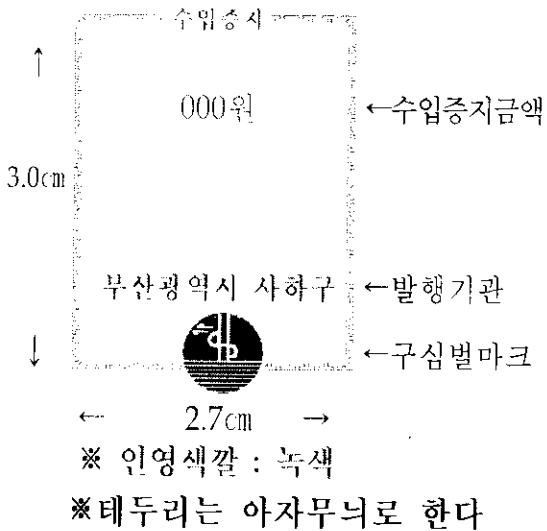
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

변경전

변경후

[별표3]

계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(제6조제3항 관련)



[별표4]

무인발급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(제6조제4항 관련)

